

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
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
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식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4월 13일
-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을 ‘골목형상점가’로 규정하고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

4. 주요내용

- 골목형상점가의 정의 신설(안 제2조제2호의2)
- 조례 내 사용하는 용어인 “상점가”를 “상점가·골목형상점가”로 수정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을 포함 할 수 있도록 수정함
-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·보완함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가. 제출배경

- 상점가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라 2천㎡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·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를 말하며, 산업통상자원부는 도·소매 점포 비중이 50%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하고 있음
-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(용역 점포로 분류)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음
- 이에, 지방자치단체가 2천㎡ 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라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☑ 충청북도 전통시장·상점가 현황

구분	인정여부				개설주기				공설시장
	계	인정		미인정	계	상설	정기	병행	
		시장	상점가						
계	77	59	2	16	77	32	10	35	5

☑ 지원 근거법령 및 인정기준

구분	전통시장	상점가	골목형 상점가	
관련 법령	전통시장법	유통산업발전법	전통시장법	
인정 방법	시·군·구에서 인정 후 공고	별도 인정절차 없음	시·군 조례로 지정	
인정 기준	면적	면적이 1천㎡ 이상인 구역	구역면적 2천㎡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	
	업종	도·소매업 또는 용역업점포 50개 이상	도·소매업 또는 용역업점포 30개 이상	업종 관계없이 소상공인 운영점포 30개 이상
	비율	도·소매점포 50%이상	도·소매점포 50%이상	해당없음
기타	온누리 상품권 사용가능			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안 제2조제2호의2는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
- 조례 내 사용하는 용어인 '상점가'를 '상점가·골목형상점가'로 수정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을 포함 할 수 있도록 수정함
-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,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지원 대상으로 신설된 '골목형상점가'를 추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임
-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받은 음식점 밀집지역 등의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
- 아울러, 시·군의 골목형상점가 지원 정책 확산을 이끌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
 - '골목형상점가'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은 시·군 조례제정을 통해 가능하며 현재까지 2개 시·군이 조례 제정을 마침
 - 「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」 / 2020.10.08 제정
 - 「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」 / 2021.02.25. 제정
 -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즉각적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·군의 관련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